

세종특별자치시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안내

핵심 요약

- ✓ 인권침해 발생 시 → 세종시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 신청 가능함
- ✓ 기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인권센터 조사 대상에 해당함
- ✓ 조사 개시 시 관련 기관은 자료 제출, 진술 협조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✓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, 제도개선 권고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- ✓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 신청된 건에 한하여 조사가 가능함

□ 제도 개요

- 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조사·구제하고,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
※ 추진 근거 : 「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□ 신청 및 조사 범위

○ 신청 가능

- 피해자 본인
- 제3자(인권침해 사실을 알고있는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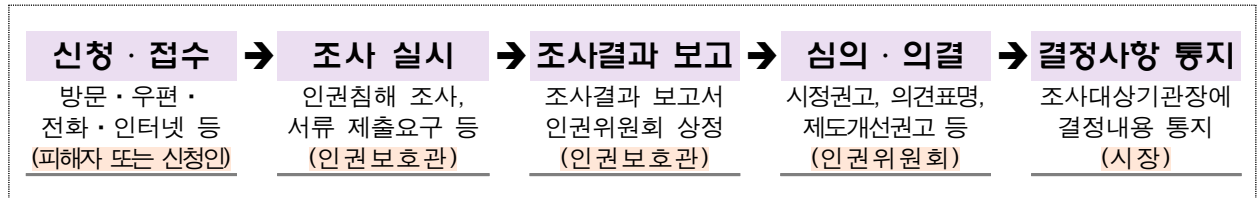
○ 조사 범위

- 시 본청, 소속기관,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
- 「市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-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(시의 위탁사무에 한정)
-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

(조사 제외) ▲법원 재판 또는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 또는 종료된 경우 ▲침해를 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▲신청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▲사인 간 분쟁 ▲사건 발생 후 1년 초과

□ 처리 흐름

- 신청된 사건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는 절차로 진행됨



□ 신청 방법

- 방문: 세종특별자치시청 4층 시민소통과(인권센터) ※ 사전 예약 후 방문
- 전화: 044-300-5952
- 이메일: sjhr@korea.kr
- 우편: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, 세종시청 4층 시민소통과(우편번호 : 30151)
- 홈페이지: 세종시청 누리집 - 민원·소통·참여 - 인권센터(인권침해 신고)

□ 유의사항

- 본 제도는 처벌이 아닌 개선 및 재발 방지 목적임
- 익명 또는 가명 신청은 불가함
-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은 보호됨
- 신청인은 인권위원회 의결 전까지 취하 가능함

< 기관 협조사항 >

- 인권침해 발생 시 제도 적극 활용
- 시민이 인권 구제제도를 인지·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
- 기관 내부 직원에 인권침해 구제제도 안내·홍보
- 조사 요청 시 자료 제출 및 사실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

5. 피해자가 입은 인권의 침해 또는 차별 내용

① 일 시

② 장 소

③ 내 용 (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칸을 늘리거나 별지 기재)

6.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
7. 첨부서류 : 있음 (서류명 :) 없음

구술 작성의 경우(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)

년 월 일

기 록 자 직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신청서가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

*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적는 부분입니다.

수사기관 등에 진정·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

20 년 월 일

접수담당자: 직급 성명 (서명 또는 날인)